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9 - 15
----------	-----------

발의연월일 : 2019. 4. .

발 의 자 : 이종숙, 김동협, 황영호, 이충현
김현희, 송영섭, 윤유선, 김용원
김성한, 송순효, 이의걸, 강선영
김선경, 최동철, 박성호, 황동현,
정정희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제5조)

다. 지원사업(안 제6조)

라. 지원의 중지(안 제7조)

마. 환수조치(안 제8조)

바.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9조)

사. 예산확보(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가족정책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4. 8. ~ 4. 15.) 결과: 의견없음

2) 전문 및 관계법령: 불 임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

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
2.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5.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예산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